

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0
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'94. 8. 6

발 의 자 : 최진판의원외 7인

1. 제 안 이 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(영 제14317호, '94. 7. 6)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 요 골 자

- 결산검사 위원수 : 3인 이내 → 3인~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- 검사위원의 해촉 :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함.(신설)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3인이내로 한다”를 “3인 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위 축 장

○ ○ ○

부산직할시 사하구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

귀하를 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장 (인)

별 표 신 · 구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위 축 장 ○○○ 부산직할시 사하구 결산검사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○년○월 ○일까지 ○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. 년 월 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장 (인)	위 축 장 ○○○ 부산직할시 사하구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 년 월 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장 (인)